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4.

발의자 : 설훈 · 강병원 · 기동민

김병기 · 김홍걸 · 민홍철

안규백 · 안민석 · 정태호

홍영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4항 신설).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국방정보화기본계획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국방정보화기본계획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.</p>
<p><u>④</u> ~ <u>⑥</u> (생 략)</p>	<p>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</p>